■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6. 1. 1.>

돌봄서비스 훈련 훈련비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훈련과정 수강현황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참여결과	본인부담 훈련비
			~	□수료 □조기취업	원
신청금액	원				

취(창)업자	취업 (해당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창 업 (해당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개 업 일		업종	
재직자	재직현황 (해당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재직 기간	. . . ~ . . .	담당업무	
입금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부담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취업자 또는 재직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2. (창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증빙서류	없음

유 의 사 항

1. 훈련과정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취(창)업한 사람이 본인부담 훈련비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돌봄서비스 분야 중 어느 하나의 직종에 취업할 것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단 이 경우 본인부담 훈련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음)
 3)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2. 훈련과정 수강 시 돌봄분야 재직상태였던 사람이 본인부담 훈련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의 어느 하나의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3. 돌봄서비스 분야(KECO 기준): 2322.보육 관련 시설 돌봄 종사원,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30.보건의료직, 55.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 아래 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적지 않습니다.

처 리	[] 지급		지급금액	원			
	[] 부지급		부지급사유				
결 재	담당		팀장		소(과)장		결재 연월일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 검토 (고용센터) → 결 재 (담당 부서장) → 지 급